

# 감 사 보 고 서

- 외부강의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2024.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 [ 목 차 ]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01
- 2. 감사범위 및 중점사항 ..... 01
- 3. 감사인원 및 기간 ..... 01
- 4. 감사결과 처리 ..... 02

## II.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평 ..... 03
- 2. 지적사항 총괄 ..... 03
-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 04

##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09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

# I. 감사추진계획

---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행동강령』,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른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등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정비된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점 파악

## 2. 중점 점검사항

- 청탁금지법에서 명시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및 제도 개선점 도출
  - 외부강의등 활동 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 준수여부
  - 외부강의등 활동에 따른 대가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여비 중복 지급 여부, 결재 및 보고 누락 여부 등 점검

##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 (과장)
- 감사기간
  - 예비조사 : 2024. 5. 27.(금) ~ 5. 31.(금)
    - 위원회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신고서 등 자료 조사 및 분석
    - 주요 외부기관에 임직원의 외부활동 현황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요청기한 : 2024. 5. 24. (금) ~ 6. 7.(금)
- 요청 대상기관 : 243개 기관
- 제출기관 및 건수 : 20개 기관, 64건
- 실지감사 : 2024. 6. 3.(월) ~ 6. 28.(금)
- 질문서 등 발부 및 회신 : 2024. 7. 3.(수) ~ 7. 16.(화)
- 감사결과 보고 : 2024. 7. 31.(수)

#### 4.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임직원
- 감사대상기간 : 2023. 1. 1.(월) ~ 2023. 12. 31.(화)
- 신고인수 : 108명
- 신고건수 : 570건

#### 5. 감사결과 처리

- 실지감사 종료 후 ■■■■ 실장, ☆☆☆ 과장은 2024. 7. 25.(목)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지적사항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2024. 7. 30.(화) ◎◎◎ 상임감사, ■■■■ 실장은 처분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함

## II. 감사결과

---

### 1. 감사결과 총평

- 본 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등 활동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제고하고자 실시함
- 더불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sup>1)</sup>을 반영하여 정비된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 2023. 1. 1.(월)부터 2023. 12. 31.(화)까지 위원회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 신고된 내역 570건과 외부기관에 임직원의 외부활동 자료 64건을 제출 받아 점검함
-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은 대부분 문화예술의 진흥 및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규정 속지 미숙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누락,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반환, 출장비 수령, 월 허용 횟수 초과 등이 확인됨
- 해당 사실을 지적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고 제도 안내와 규정 정비를 통해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1) 소속 임직원이 기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외부활동을 하는데도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하거나, 출장으로 복무 처리를 하고 외부활동을 한 임직원에게 출장여비가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외부 활동에 따른 출장 처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부활동의 간접적 효과가 아닌 외부활동과 위원회 자체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합계			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9	9	876,006	-	-	3 (876,006)	-	-	3 (876,006)	1 (1)	4 (8)	-	-	1	-	-

## 3. 지적사항 요약

### □ 외부강의등 관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 1) 외부강의등 신고 누락

##### ○ 업무처리기준

-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2항,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1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요청 내용 및 사례금 총액 등을 위원장에게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 지적내용

- 주요 외부기관에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활동 현황자료 제출 협조를 받아 검토하였으며 ◇◇◇◇◇◇ ●●● 등 3인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를 누락하였음<sup>2)</sup>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기총액 (원)
1	◇◇◇◇◇◇	●●●	2023-03-07	심사	■재단	○○예술교류	450,000
2	◇◇◇◇◇◇	●●●	2023-03-09	심의	◎문화재단	○○○○ 지원사업 서류심의	503,000
3	◇◇◇◇◇◇	●●●	2023-03-17	심의	◎문화재단	○○○○ 인터뷰심의	505,600
4	◇◇◇◇◇◇	●●●	2023-04-28	심사	♡진흥원	○○○○ 채용 면접전형 심사	450,000
5	◇◇◇◇◇◇	●●●	2023-07-19	심사	♣극단	○○○○ 서류심사	200,000

2) 신고누락 제외(2건) : ▲▲▲▲▲ ◎◎◎은 2023-04-07 외부활동 당시 절차에 따라 신고 하였으나 신고서가 미결재(작성중) 상태로 확인됨. ◇◇◇◇◇ ●●●은 2023-12-26 외부활동 당시 절차에 따라 신고 하였으나 기록물 이동 시 신고서가 삭제된 상태로 확인됨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기총액 (원)
6	◇◇◇◇◇	●●●	2023-12-20	심사	♡진흥원	○○○○ 면접전형 심사	450,000
7	♣♣♣♣♣	◆◆◆	2023-11-09	자문	♡진흥원	○○○○ 노하우 공유	421,000
8	☆☆☆☆☆	♠♠♠	2023-08-16	평가	●전당	○○○○ 제안평가	550,000

- 이 중 ◇◇◇◇◇ ●●●은 2020년 자체 감사 ‘외부강의등 제도운영 관련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조사’ 결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누락 및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출장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훈계)’ 조치 요구에 따라 주의서를 발급 받은 사례 있음에도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됨을 확인함
- 또한, 신고 누락 6건과 ERP에 신고된 다른 외부강의등 활동 내역 1건을 살펴보면 2023년 3월에만 총 4회 수행하였는데 이는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5항에 따른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함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기총액 (원)	신고구분	비고
1	◇◇◇◇◇	●●●	2023-03-07	심사	■재단	○○예술교류	450,000	신고누락	-
2	◇◇◇◇◇	●●●	2023-03-09	심의	◎문화재단	○○○○ 지원사업 서류심의	503,000	신고누락	-
3	◇◇◇◇◇	●●●	2023-03-17	심의	◎문화재단	○○○○ 인터뷰심의	505,600	신고누락	-
4	◇◇◇◇◇	●●●	2023-03-22	심사	●문화재단	○○○○ 지원사업 심의	400,000	ERP신고	3월 중 4회 활동

## 2) 월 허용 횟수 초과 의견

### ○ 업무처리기준

-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7항,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5항에 의하면, 외부활동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외부활동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활동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내용

- □□□□□ ◆◆◆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월 3회를 초과 하였음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가총액 (원)	비고
1	□□□□□	◆◆◆	2023-10-06	심사	♣진 흥원	○○○○과업 심의위원회	100,000	-
2	□□□□□	◆◆◆	2023-10-20	심사	▣평가원	○○○○과업 심의위원회	200,000	-
3	□□□□□	◆◆◆	2023-10-24	평가	◆주식회 사	○○○○ 제안서 기술평가	400,000	-
4	□□□□□	◆◆◆	2023-10-30	평가	▣평가원	○○○○ 제안서 기술평가	200,000	10월 중 4회 활동

- 또한 점검 중 시스템상 월 3회를 초과한 외부활동을 신고할 수 없게 제한 해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의 외부활동 신고 의무를 방해하고 횡수 초과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해제가 필요함

### 3)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의 건

○ 업무처리기준

-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5항 및 제18조,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부활동의 대가로서 「행동강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sup>3)</sup>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 직원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8조3항에 따라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지적내용

- ★★ ◆◆◆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초과 사례금을 받았으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음

3)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60만원이며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내용	미신고 금액(원)	비고
1	★★★	▣▣▣	2023-03-31	기고	♥미술관	○○○○ 강연 및 원고 작성	400,000 <sup>4)</sup>	사례금 외(원고료) 초과 지급
2	★★★	▣▣▣	2023-04-26	강연	●전당	○○○○ 미래 강연	260,000 <sup>5)</sup>	사례금 외(저작권료, 원고료) 초과 지급
합계							660,000	-

#### 4) 외부강의등 사유의 출장 시 출장여비 지급의 건

○ 업무처리기준

-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6항에 의하면, 출장으로 처리하는 외부활동은 사례금을 받을 경우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지적내용

- ▽▽▽▽ ●●● 등 4인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사유의 출장 시 다음과 같이 출장비를 수령하였음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 명	내용	대가총액 (원)	출장여비 지급내역	
								항목	지급액(원)
1	◆◆◆◆	□□□	2023-04-03	발표	●전당	○○○○ 직업군 소개	450,000	일비	20,000
2	△△△△△	♣♣♣	2023-02-21	자문	♠교육청	○○○○자 문회의 참석	100,000	일비	20,000
3	○○○○○○	●●●	2023-03-03	심사	♡연합회	○○○○사 업 선정 심사	200,000	숙박비	72,206
4	▽▽▽▽	●●●	2023-11-04	토론	●관리학 회	○○○○토 론참석	100,000	교통비	103,800
합계									216,006

4) 사례금은 지급주체, 일자, 대상,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에만 각각 지급이 가능하나, 동일 요청건으로 총 100만원 (강의료 60만원, 원고료 40만원) 분리 신고 및 수령

5) 총 95만원(강의료 60만원, 유튜브 송출 저작권료 20만원, 원고료 6만원, 여비 9만원) 신고 및 수령(여비는 별도 지급 가능)

#### 4. 조치계획

##### □ 외부강의등 관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 1) 외부강의등 미신고의 건

- 외부강의등 미신고 3인 중 1인은 과거 자체감사 시 동일건으로 지적을 받았던 사례가 있음에도 6건의 신고누락이 재발되었고 동시에 월 허용 횟수 3회를 초과하여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주의(경고)’ 촉구, 그 외 2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 처분

###### 2) 월 허용 횟수 초과외 건

- 월 허용 횟수 3회를 초과한 1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 처분
- 월 3회 초과 신고 시 시스템 제한 해제 ‘시정요구’

###### 3)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외 건

- 2건의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1인에게 ‘주의’ 및 초과사례금 660,000원을 제공자에게 ‘시정(반환)’ 처분

###### 4) 외부강의등 사유외 출장 시 출장여비 지급외 건

-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출장비를 수령한 4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 및 216,006원을 ‘시정(회수)’ 처분

##### □ 관련 규정 미인지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등 필요

- 점검 시 파악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관리부서(□□□□□)의 대책 마련 요구 ‘통보’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분 요구사항
1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주의(경고)	○ 과거 동일한 위반으로 '주의' 처분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추가로 월 허용횟수를 초과한 1인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
		주의	○ 신고를 누락한 2인에 대해 '주의' 처분
2	외부강의등 허용 횟수 초과	주의	○ 월 허용 횟수 3회를 초과한 1인에 대해 '주의' 처분
		시정요구	○ 월 3회 초과 신고 시 시스템 제한 해제
3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주의	○ 초과사례금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1인에 대해 '주의' 처분
		시정(반환)	○ 초과사례금 반환(2건) 총 660,000원에 대하여 '시정(반환)' 처분
4	외부강의등 관련 출장비 수령 위반	주의	○ 출장 여비를 수령한 4인에 대해 '주의' 처분
		시정(회수)	○ 출장 여비 지급(4건) 총 216,006원에 대하여 '시정(회수)' 처분
5	외부강의등 관련 안내 강화 및 관리체계 등 정비	통보	○ 관련 규정 미인지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 및 관리체계 등 정비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경고	◇◇◇◇◇◇	○○○	일반직 2급	●●●
	주의	♣♣♣♣♣	○○	일반직 4급	◆◆◆
	주의	☆☆☆☆☆	○○	일반직 5급	♠♠♠
외부강의등 허용 횟수 초과	주의	□□□□□	○○	일반직II 5급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주의	★★★	○○	계약직	■□■
외부강의 관련 출장비 수령 위반	주의	○○○○○○	○○○○○	일반직 3급	●●●
	주의	△△△△△	○○	일반직 3급	♣♣♣
	주의	▽▽▽▽	○○	일반직 5급	●●●
	주의	◆◆◆◆	○○	일반직II 5급	□□□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 [별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증거서류 목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경고 · 주의

제 목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조 치 부 서 ■■■■■■

◇◇◇◇◇ ●●●

관 련 자 ♣♣♣♣♣ ◆◆◆

☆☆☆☆☆ ♠♠♠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감사실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24일 정비된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술위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신고 내역 570건과 외부기관에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활동 자료 64건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항,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신고 및 승인)1항에 의하면 모든 외부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외부활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모든 외부활동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등 3인은 [표 1]과 같이 ■재단 등 8개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아 참석하여 사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아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외부강의등 신고누락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가총액 (원)
1	◇◇◇◇◇◇	●●●	2023-03-07	심사	■재단	○○예술교류	450,000
2	◇◇◇◇◇◇	●●●	2023-03-09	심의	◎문화재단	○○○○ 지원사업 서류심의	503,000
3	◇◇◇◇◇◇	●●●	2023-03-17	심의	◎문화재단	○○○○ 인터뷰심의	505,600
4	◇◇◇◇◇◇	●●●	2023-04-28	심사	♡진흥원	○○○○ 채용 면접전형 심사	450,000
5	◇◇◇◇◇◇	●●●	2023-07-19	심사	♣극단	○○○○ 서류심사	200,000
6	◇◇◇◇◇◇	●●●	2023-12-20	심사	♡진흥원	○○○○ 면접전형 심사	450,000
7	♣♣♣♣♣	◆◆◆	2023-11-09	자문	♡진흥원	○○○○ 노하우 공유	421,000
8	☆☆☆☆☆	♠♠♠	2023-08-16	평가	●전당	○○○○ 제안평가	550,000

※ 상기 사실은 외부기관에 요청한 '위원회 임직원 대상 2023년 외부강의등 참여 현황' 회신 문서를 통해 확인

특히 ◇◇◇◇◇ ◇●●●의 경우 지난 2020년 감사실 특별감사 결과,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한 신고누락 및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신고 누락의 사례가 재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고 누락 6건과 ERP에 신고된 다른 외부강의등 활동 내역 1건을 포함하면 2023년 3월에만 총 4회 수행하였고 월 3회를 초과함에 따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5항도 위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표 2] 월 허용 횟수 초과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가총액 (원)	신고구분	비고
1	◇◇◇◇◇	●●●	2023-03-07	심사	■재단	○○예술교류	450,000	신고누락	-
2	◇◇◇◇◇	●●●	2023-03-09	심의	◎문화재단	○○○○ 지원사업 서류심의	503,000	신고누락	-
3	◇◇◇◇◇	●●●	2023-03-17	심의	◎문화재단	○○○○ 인터뷰심의	505,600	신고누락	-
4	◇◇◇◇◇	●●●	2023-03-22	심사	●문화재단	○○○○ 지원사업 심의	400,000	ERP신고	3월 중 4회 활동

#### 4. 관련자들 주장 및 판단

신고를 누락한 3인을 대상으로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며 규정 미숙지에 따른 실수, 불찰에 의한 누락, 요청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관련자들의 ERP에 신고된 다른 외부강의등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한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거 동일한 건으로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수의 신고 누락이 재발되고 월 허용 횟수를 초과한 1인에게는 업무 부주의에 대해 반성하도록 ‘경고’ 하고, 그 외 2인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 활동을 수행하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인을 대상으로 「감사규정」 제26조, 「인사관리규정」 제44조2에 따라 ‘경고’ 및 ‘주의’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주의]

#### [관련자]

○ ◇◇◇◇◇◇◇	○○○	●●●	경고
○ ♣♣♣♣♣	○○	◆◆◆	주의
○ ☆☆☆☆☆	○○	♠♠♠	주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주의

제 목 외부강의등 허용 횟수 초과  
조 치 부 서 ■■■■■  
관 련 자 □□□□□ ◆◆◆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 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감사실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24일 정비된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술위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신고 내역 570건과 외부기관에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 자료 64건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7항,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신고 및 승인)5항에 의하면, 외부활동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외부활동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활동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은 [표 3]와 같이 2023년 10월 ♣진흥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아 참석하였고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5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월 허용 횟수 초과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가총액 (원)	비고
1	□□□□□	◆◆◆◆	2023-10-06	심사	♣진흥원	○○○○과업 심의위원회	100,000	-
2	□□□□□	◆◆◆◆	2023-10-20	심사	▣평가원	○○○○과업 심의위원회	200,000	-
3	□□□□□	◆◆◆◆	2023-10-24	평가	◆주식회사	○○○○ 제안서 기술평가	400,000	-
4	□□□□□	◆◆◆◆	2023-10-30	평가	▣평가원	○○○○ 제안서 기술평가	200,000	10월 중 4회 활동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관련자는 규정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ERP 신고 시 월 3회 이상 누적하여 신고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게 제한을 걸어두었으나 시스템 오류로 제한되지 않아 스스로 문제없음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관련자의 부주의가 인정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를 처분하며, 월 3회 초과 신고 시 시스템 제한은 공직자의 외부강의등 활동 신고 의무를 방해하고 횟수 초과 확인이 불가하게 만드는 제한으로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 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허용횟수를 초과한 1인을 대상으로 「감사규정」 제26조, 「인사관리규정」 제44조2에 따라 ‘주의’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      ◆◆◆      주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 신고 행위를 방해하는 시스템 초과 신고 제한을 해제 조치 하시  
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주의 · 시정(반환)

제 목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조 치 부 서 □□□□□

관 련 자 ★★★ ◆◆◆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 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감사실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24일 정비된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술위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신고 내역 570건과 외부기관에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 자료 64건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5항,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외부활동의 제한)3항 및 4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활동의 대가로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원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3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 공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23조(과태료 부과)4항에서는 초과하는 사례금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가로 동법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와 위원회 「행동강령」 별표2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은 [표 4]과 같이 ♥미술관 등 2개 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아 참석하여 외부강의등 활동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아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3항, 4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반환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내용	초과사례 금액(원)	비고
1	★★★	◆◆◆	2023-03-31	기고	♥미술관	○○○○ 강연 및 원고 작성	400,000	사례금 초과지급 (원고료)
2	★★★	◆◆◆	2023-04-26	강연	●전당	○○○○ 미래 강연	260,000	사례금 초과지급 (저작권료, 원고료)
합계							660,000	-

○ 연번 1의 경우 ♥미술관에서 ○○○○를 위한 예술문화강좌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강의료(60만원), 원고료(40만원) 명목으로 총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 ◆◆◆은 각각 분리하여 신고 및 수령함. 사례금 상한액 60만원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여야 하나 상한액을 초과하여 원고료 40만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 연번 2의 경우 ●전당에서 ○○○○ 미래에 대한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강의료(60만원), 유튜브 송출 저작권료(20만원), 원고료(6만원), 여비(9만원) 명목으로 총 95만원을 지급하였고 ★★★ ◆◆◆ 역시 총 95만원으로 신고 및 수령함. 사례금 상한액 60만원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여야 하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저작권료 20만원, 원고료 6만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여비의 경우 별도 지급이 가능하여 제외)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관련자는 [표 4] 연번 1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원고료는 강의와는 별개로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요청건으로 이해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표 4] 연번 2의 경우, 신고 전 강의료 이외의 저작권료 및 원고료 수령 여부에 대해 관리부서인 ■■■■■ 담당자에게 문의 후 문제없다는 답변에 따라 신고 및 수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 반환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관하여 관련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표 4] 연번 1의 경우, 요청기관인 ♥미술관에서는 ○○○○를 위한 예술문화강좌 강의와 강의를 위한 원고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추후 강의 원고를 바탕으로 출판물로 발간할 계획이 있었으나 무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술관 담당자가 사례금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연번 2의 경우, 요청기관인 ●전당에서는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유튜브 송출 저작권료 및 원고료를 지급하였는데 담당자가 사례금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관리부서인 ■■■■■ 담당자 역시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요청기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만을 관련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자는 초과사례금을 고의적으로 수령하였다기보다 규정 미숙지에 따른 단순 실수로 판단되나 부주의가 인정됨에 따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하며 해당 초과사례금은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 활동을 수행하면서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1인을 대상으로 「감사규정」 제26조, 「인사관리규정」 제44조2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고, 초과사례금은 제공자에 반환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주의 및 시정(반환)]

[관련자]

○ ★★★

○○



주의 및 시정(반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주의 · 시정(반납)

제 목 외부강의등 관련 출장비 수령 위반

조 치 부 서 ■■■■■, ♥♥♥♥♥

관 련 자 ○○○○○ ●●●  
△△△△△ ♣♣♣  
▽▽▽▽ ▣▣▣  
◆◆◆◆ □□□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감사실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24일 정비된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술위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신고 내역 570건과 외부기관에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 자료 64건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외부활동의 제한)6항에 의하면, 출장으로 처리하는 외부강의등 활동은 사례금을 받을 경우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등 4인은 [표 5]와 같이 ♥연합회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각각 요청받아 출장으로 처리하여 참석하였으며 외부강의등 활동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아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6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출장비 수령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내용	대가총액 (원)	출장여비 지급내역	
								항목	지급액(원)
1	○○○○○○○	●●●●	2023-03-03	심사	♥연합회	○○○○사 업 선정 심사	200,000	숙박비	72,206
2	△△△△△	♣♣♣♣	2023-02-21	자문	♠교육청	○○○○자 문회의 참석	100,000	일비	20,000
3	▽▽▽▽▽	●●●●	2023-11-04	토론	●관리학회	○○○○토 론참석	100,000	교통비	103,800
4	◆◆◆◆◆	□□□□	2023-04-03	발표	●전당	○○○○ 직업군 소개	450,000	일비	20,000
합계									196,006

### 4. 관련자들 주장 및 판단

외부활동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수령한 4인을 대상으로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처리 하였다고 설명하며 향후 지침을 정확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사례금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아 기관의 여비를 수령한 것으로 중복 수급에는 해당되지 않고, 외부강의등 활동 시 발행하는 여비 일체를 자부담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원들의 외부강의등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타기관이 임직원 개인에게 요청한 외부강의등 활동을 위해 기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활동의 대가로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가 지급되는 만큼 기관 여비 지급 불가 방침이 외부강의등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요청기관의 사례금 외 여비 지급 여부는 요청기관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기관의 여비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해당 지적 사항은 과거 감사실 자체감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시 ‘주의’를 받은 사항임에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주요 위반 사례로 확인되며 관련자들에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여비를 수령한 4인을 대상으로 「감사규정」 제26조, 「인사관리규정」 제44조2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고, 지급된 출장여비를 회수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주의 및 시정(회수)]

#### [관련자]

○ ○○○○○○	○○○	●●●	주의 및 시정(회수)
○ △△△△△	○○	♣♣♣	주의 및 시정(회수)
○ ▽▽▽▽▽	○○	●●●	주의 및 시정(회수)
○ ◆◆◆◆◆	○○	□□□	주의 및 시정(회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통보

제 목 외부강의등 안내 강화 및 관리체계 등 정비

조 치 부 서 ■■■■■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술위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신고 내역 570건과 외부기관에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 자료 64건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월 허용 횟수,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납, 외부강의 관련 출장비 수령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사유를 살펴보면 기준 숙지 미흡에 따른 단순 실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른 신고 기한일, 보완신고 대상 여부, 사례금 상세 내역 작성, 공문 첨부, 성과보고 대상 여부 및 성과물 사내 인트라넷 게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법령과 규정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식 환기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교육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적사항 중 ‘외부강의 관련 출장비 수령’은 과거 감사실 자체감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시 ‘주의’를 받은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주요 위반 사례로 확인된다.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 안내를 강화할 뿐 아니라 외부강의등 활동으로 인한 출장 시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에 외부강의임을 표기하여 승인권자가 출장을 승인할 때 외부강의등 활동에 따른 출장임을 인지하고 출장여비 수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외부강의등 활동 시 복무처리와 관련하여 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외출을 이용한 참여, 업무 중 서면 평가(점검회) 참여, 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장 승인을 받고 출장 업무수행 중 타기관의 심의에 참여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기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활동을 하는데도 출장으로 승인을 받고 활동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타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 활동을 하는 경우 휴가 사용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기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보다 엄격한 승인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추가로 기관 업무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외부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위원장 승인(결재)을 받도록 정하는 등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예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통보)